

1. 입건 이전 (2017. 1. ~ 2020. 2.)

가. 아동학대의심신고

2017. 1. 경 아이가 밤을 먹은 이후에 이상 증상을 보여 119신고하여 아산병원 응급실 방문하였고, 응급실 의사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점, 필수예방접종이 지연된 점을 이유로 아동학대의심신고를 하였다.

나. 현장조사

2017. 2. 경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장화숙 외 1명, 서울강동경찰서 이광석 외 1명은 거주지로 찾아와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강동경찰서, 서울시아동복지센터와의 통화에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녹취 파일 있음)**

1) 강동경찰서 (2017. 3. 8.)

“어머니는 잘 협조 해주셔서 아이의 안전을 잘 확인했고 나도 확인을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장화숙 (2017. 3. 11.)

“학대했다는게 아니었어요. 왜 자꾸 학대로 몰고가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학대 아니니까 제발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다 보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나 그런것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장화숙은 현장조사 이후 출생신고 지연 및 필수예방접종 지연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하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

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동남권) 사례 이관

1) 2017. 3. 28. 사후관리

동남권이 이관된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접근 하였으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 하였고, 아동학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든 관리든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2) 2018. 5. 경

동남권 직원이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수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함.

3) 2020. 2. 11. 문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정혜다 상담원입니다. ^^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마스크가 부족하다고하여

취학전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서윤이랑 어머니 한번만 뵙고 종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주 수,목 중에 방문드리겠습니다. ^^

4) 2020. 2. 12. 방문

동남권 직원들이 거주지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들기고 창문을 들여다 보고 소란을 피우다 돌아감.

5) 2020. 2. 21. 문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정혜다 상담원입니다.

엣그제 삼촌이라는 분과 전화통화했으며 경찰과 동행하고 아동 만나야 하는 근거 가지고 오라고 하여 오늘 오후에 경찰과 동행하여 가정방문 진행하려고 합니다.

6) 2020. 2. 21. 재방문

동남권 직원들이 서울강동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함께 방문함.

당시 거주지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동생이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과 함께 거주지 근처에서 동남권 직원들(APO 포함)과 대면하여 아동학대 성립 근거에 대한 서면근거를 요구하였고, 출동한 경찰들의 중재하에 동남권이 서면근거를 가지고 재방문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감. 이후 동남권은 서면근거 대신 서울강동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2.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 입건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 (2020. 3. ~ 2020. 7.)

가. 입건

2020. 3. 경 동남권의 수사의뢰로 서울강동경찰에서 “피의자는 2015. 4. 30.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 3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임 의심사건으로 신고 접수되어 동 기관의 요청으로 2017. 3. 20.에서야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후에도 피의자는 피해아동에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아동을 학대(방임)하였다.”라는 혐의로 입건함.

나. 수사 독촉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수 차례 조사 일정을 문의 하였지만, N번방 사건 때문에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 주겠다 회신함.

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20. 6.경 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2020. 6. 8. 경찰청장 앞으로 민원을 보냈고, 이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구실을 근거로 2020. 6. 1. 발급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2020. 6. 10. 집행함.

라. 압수수색검증 결과

1) 압수수색 결과

아동학대 행위에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2) 검증 소견

“피해아동의 신체 성장 및 발달은 또래 수준으로 잘 자라고 있고 진료실에서 아이를 진료하며 평가하는 동안 여느 아이처럼 엄마와

눈 맞추며 대화하고 웃으며 밝게 소통하는 등 보호자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보였다. 피해아동의 거부로 혈액검사를 통한 영양학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학적 검진상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 국립경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 아동보호사건 송치

서울강동경찰서는 수사결과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아동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건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서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함.

3. 이후 대응 (2020. 7. ~)

가. 보건복지부 민원

1) 필수예방접종

가) 2020. 9. 15. 1AA-2009-0465844

“필수예방접종대상에 대한 예방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따라서 의무화규정이나 미접종시 제재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나) 2020. 12. 9. 1AA-2012-0277702

“필수예방접종의 지연 또는 누락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수예방접종의 지연 또는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출생신고

가) 2020. 12. 9. 1AA-2012-0278484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거주환경, 양육환경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써 출생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는지 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나) 2020. 12. 11. 1AA-2012-0320289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생신고 뿐만 아니라 거주환경, 양육환경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써 출생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으로 판단된 경우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지연된 모든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신고 (필수예방접종 지연)

서울강동경찰서에 특정인을 필수예방접종 지연의 혐의로 신고 했지만,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민원인의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검토한 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권장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접종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신고한 내용상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자녀의 예방접종 시기를 몇 주 지연, 실시한 행위만으로는 수사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함.

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요청

1) 강동구

“방문 당시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방임으로 의심할 합리적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

“예방접종 시기가 늦어진 상태 자체만으로 학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2) 송파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시기가 늦어진 상태 자체만으로 학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3) 강남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지연된 사실을 파악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하므로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아동학대 방조, 직무유기)

2021. 5. 14. 서울강동경찰에 고발 하였고, 입건 후 세종경찰서로 인계함.

4. 목표

가. 서울강동경찰서

1) 학대인 경우

아동보호사건 의견서에 “피해아동이 제대로 걷지 못하였으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의자가 피해 아동의 MRI촬영을 거부하여 더이상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였던 점”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자신의 모친과 삼촌이라 칭하는 남성을 끌어들여 현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은 채 피해 아동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의자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태로 영장 없이는 피의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을 대면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집 수색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로 함.”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수사를 편의적으로 한 죄.

2) 학대가 아닌 경우

위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한 모든 것.

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장화숙

1) 학대인 경우

사법절차에 의한 처분이나 처벌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단순 신고 사실의 기록을 넘어 아동학대행위자로 기록한 행위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인지를 따져 행정처분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

2) 학대가 아닌 경우

위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기록한 부분에 대한 공전자기록자위작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 외 가능한 모든 것

다. 보건복지부

1) 학대인 경우

출생신고와 필수예방접종 모두 국가에서 관리 가능한 정보이며, 이를 관리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결과를 쉽게 방지 할 수 있음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책무를 방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죄.

라. 민사소송

학대가 아닌 경우 이와 관련된 모두에 대한 민사소송.